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4 선고 2021재가단1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재심피고) A

피고(재심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6. 선고 2018가단3314 판결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 ① 피고(재심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B와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20 지분에 관하여 2017. 3. 7.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③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2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3. 8. 접수 제159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9. 피고 및 C 주식회사(이하 ‘C’ 이라 한다)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등이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C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3314, 이하 ‘재심대상사건’ 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소장이 2018. 4. 13.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피고와 C 등에게 모두 송달되었는데, 피고와 C 등이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8. 7. 6.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 및 판결서 송달 등은 모두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는데, 피고 등이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가. 피고의 주장

C 대표이사인 Q이 토지매도인이었던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 그런데, C 측에서 곧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공사업체와 합의서를 다 작성하여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피고가 대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심대상사건이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그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및 제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을 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년경 파주시 I 토지 등을 C에 매도하였는데, C 대표이사인 Q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2019. 7. 19.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아무런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C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Q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피고 명의의 사문서위조, 행사 등에 관한 범행뿐이며, 재심대상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C이나 Q이 어떤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Q이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와 C 등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자백간주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조된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가 증거로 채용되어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469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층 18.90㎡ 2층 157.82㎡ 3층 157.82㎡ 4층 157.82㎡ 5층 157.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61.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파주시 ㎡ 답 1802㎡(외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3. 8. 접수 제15926호 피고 지분(20분의18)
이전청구권가등기)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층 18.90㎡ 2층 157.82㎡ 3층 157.82㎡ 4층 157.82㎡ 5층 157.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61.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파주시 ㎡ 답 1802㎡(외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3. 8. 접수 제15926호 피고 지분(20분의18)
이전청구권가등기). 끝.

<관할등기소 : 외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